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 체계 마련〉

■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34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가. 제정안의 필요성	3
나. 제정안의 체계	10
2. 조문별 검토	12
가. 제명,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12
나.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 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제5조)	16
다.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절차(안 제6조~제12조)	21
라.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안 제13조 및 제14조)	39
마. 도시계획·건축에 관한 특례(안 제15조)	54
바.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안 제16조)	59
사. 재정지원 등(안 제17조~제19조)	64
아. 운영기관의 설립·지정(안 제20조)	72
자. 민간자본의 유치(안 제21조)	75
차. 안전관리조치 등(안 제22조~제25조)	81
카. 부칙	8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교홍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2. 12.
3. 회 부 일 : 2026.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K-팝 등의 공연 문화가 성장함에 따라 대형 공연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 인프라가 부족하여 공연시설이 아닌 스포츠 경기장 등을 활용하고 있어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대규모 공연장의 부족으로 국내 팝스타들이 공연시설을 갖춘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팬들의 방한 기회를 상실시켜 한류 열풍을 경제적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K-팝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과 문화·관광 산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류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III.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필요성

2024년 외래관광객조사¹⁾에 따르면 방한 외래관광객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38.3%)’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류 콘텐츠 중 해외한류실태조사²⁾에서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K-팝’이 2017년부터 8년 연속 1위를 차지해 전 세계인에게 한국 대표 이미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음악에 대한 ‘유료 이용의향 있음’의 답변 비율은 2020년의 38.2%보다 7.7% 상승한 45.9%로 해외에서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2023년의 대중음악 공연의 국내 및 해외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해외 매출액의 전년 대비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1) 문화체육관광부, 「2024 외래관광객조사」, 2025. p.25.

2)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5 해외한류실태조사」, 2025., p.56. ~153.

는 국내 공연장 인프라가 급성장하는 K-팝 산업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³⁾

< 2023년의 대중음악 공연 국내 및 해외 매출액 현황 >

연도	해외매출액	국내매출액
2022년	3,683억원	4,536억원
2023년	5,885억원 (전년대비 37.4% 증가)	5,762억원 (전년대비 27.0% 증가)

자료 : 해외매출액(‘데이터로 살펴본 K-팝 해외 매출액 동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국내매출액(공연예술통합전산망 공연통계(<https://kopis.or.kr/>))

K-팝을 포함한 대중음악 공연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수도권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1만석 이상 실내 공연장은 4개소에 불과하여, 수도권 체육시설을 단기적 공연장 대체 시설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연 편의성이 부족하고 음악시설과 무대의 설치 및 철거 비용⁴⁾이 적지 않게 발생하며 스포츠 시즌을 피해야 하는 불편함도 존재함.

3) 현장의 목소리: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으로 대규모 공연 공간이 부족하고, 이를 대체하여 중형 공연장에서 공연을 다회 개최하면서 공연장 부족 현상이 연쇄적으로 업계에 파급됨. 또한, 최근 크게 증가한 대중음악 공연 수요에 비해 국내에는 아레나 급부터 중소 규모까지 대중음악 공연장이 많이 부족함.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1권」. 2025. 12., p.308.

4)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기 조성된 체육시설 등의 대중음악 공연 확대를 위해 이동형 좌석, 흡음재 등 소음 방지 및 음향 보완 관련 시설, 무대 조명, 분장실 등 공연 편의 시설, 안전관련 시설, 잔디 등 시설복구비를 지원하는 예산 120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임.

한편, 현재 건설 중인 서울아레나 등이 완공되면 공연장 인프라가 일부 확충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 규모로는 글로벌 팬덤 규모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세계적 K-팝 스타들의 공연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규모 공연장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⁵⁾

< 수도권⁶⁾ 주요 대형 공연장 현황 >

공연장명(위치)	실내외	준공연도	관람석	운영주체	비고
케이스포돔 (서울 송파구)	실내	1986	14,549석	한국체육 산업개발(주)	다목적 공연장 (가동률 90% 이상)
잠실 실내체육관 (서울 송파구)	실내	1979	11,044석	서울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2026년~2031년 리모델링 예정
고척스카이돔 (서울 구로구)	실내	2015	16,601석	서울시설공단	프로야구 전용
인스파이어 아레나 (인천 중구)	실내	2024	15,000석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다목적 공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 마포구)	실외	2001	66,704석	서울시설공단	프로축구 전용 ⁷⁾
고양종합운동장 (경기 고양시)	실외	2003	40,907석	고양도시관리 공사	체육시설
문학경기장 (인천 미추홀구)	실외	2002	48,590석	(주)신세계 야구단	체육시설
서울 아레나 (서울 도봉구)	실내	2027 준공예정	18,000석	(주)서울아레나	음악 전문 공연장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K-팝 수요 못 따라가는 콘서트장, 5만 석 아레나 짓자', 한겨레, 2025. 9. 6.

6) 수도권 이외의 「공연법」상 '등록공연장' 중 가장 객석 수가 많은 공연장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임(객석수 7,000석). 출처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7) 대중음악 공연 대관 일수는 증가 추세(2022년 0건 → 2024년 29건)이나, 최근 잔디 훼손 문제로 좌석만 대관하는 것으로 방침을 수정하였고 연 56일만 개방

특히, K-팝 공연은 단순 관람을 넘어 숙박, 쇼핑, 관광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관광·미용·패션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그런데, 공연 인프라 부족으로 K-팝스타들이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을 방문하는 팬들의 방한 기회를 상실시켜 연관 산업의 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들이 창출할 국내에서의 소비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대형 규모의 공연형 아레나 구축 기본연구비 8억원을 2026년 예산에 반영⁸⁾하여, 2026년 2월 ‘스포츠·공연 복합형 돐구장 건립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입찰 공고하였으며,

공연장 단독시설로는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하여 스포츠, 관광, 콘텐츠가 조화된 방향으로 2034년까지 사업완료를 계획하고 있음.⁹⁾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¹⁰⁾들은 해당 공

8)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5권」. 2025. 12., p.409.

9) ‘스포츠·공연 복합형 돐구장 건립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6. 2.

연형 아레나를 유치하려고 희망하고 있으며, 나아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¹¹⁾들은 민자유치 등을 통해 별도로 중대형 규모의 공연장과 체육 시설 등이 연계된 복합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중대형 규모의 공연장이 포함된 복합 문화공간을 경쟁적으로 건립·운영하게 될 경우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정안은 공연장과 그에 부수되는 문화·체육·관광·상업·숙박·회의·포럼·전시 등의 기능이 집약된 시설을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이하 “특별구역”이라 함)을 지정하고,

10) 광명시(‘광명시장은 “케이(K)-아레나는 광명시가 문화·관광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공모 절차에 맞춰 아레나 유치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보도자료, 2025. 12.)

춘천시(‘춘천시, 공연형 아레나 유치 도전장’, 춘천시 보도자료, 2026. 1.)

11) 충청남도(‘충남 천안아산에 프로야구 경기와 케이(K)팝 공연을 연중 개최할 수 있는 대형 돐구장 건립이 추진된다.’, 충청남도 도정신문, 2025. 11.)

울산광역시(‘세계적 공연장 삼산매립장에 짓는다.’,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24. 12.)

경기도 고양시(‘경기도지사는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서 최대 2만에서 5만까지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뉴스포털, 2025. 10.)

경기도 하남시(‘하남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수도권의 새로운 문화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2-3만명 K-pop 전용 공연장, 세계적 영상 스튜디오, 아카데미 등이 함께 들어설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를 추진 중이다.’, 하남시 보도자료, 2025. 11.)

해당 구역에서 조성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며, 사업 완료 후 관리·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일련의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형 규모의 공연형 아레나 구축사업의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재정의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관람객의 편의성, 경제적 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부지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의 입법임.

더 나아가, 제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공연형 아레나 이외에도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종합시설을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문화산업, 관광산업과 이와 관련되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클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여 문화·경제적 발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 추진 중인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조성,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¹²⁾,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등 지정¹³⁾과 같은 정책사업을 통해 대형공연 인프라 구축 및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인·허가 의제 및 영향평가 간소화는 심의의 목적과 영향, 의제를 통한 부가적 이익의 형량 등을 비교하여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한바, 기본·개발계획 및 조성위원회 심의에 따른 의제가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12)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1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나. 제정안의 체계

통상 제정법은 조문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규정 내용의 성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章)으로 나누어 규정¹⁴⁾하나, 제정안은 본칙 25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또한, 제정안은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총칙 사항과 한국형 복합문화 공간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및 보칙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제정법의 입법체계를 따른 것임.

조문번호	조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의 원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개발계획의 수립
제8조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의 설치
제9조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의 지정 등
제10조	특별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14)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80.

조문번호	조제목
제11조	사업시행자의 선정
제12조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3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14조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5조	도시계획·건축에 관한 특례
제16조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제17조	재정지원
제18조	세제 감면
제19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20조	운영기관의 설립·지정
제21조	민간자본의 유치
제22조	안전관리 조치
제23조	환경·지역 등 상생 의무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제1조	시행일
부칙 제2조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에 관한 경과조치

2.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제 정 안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공연·문화·관광 산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공연문화 등을 세계적으로 알려 국가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이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과 그에 부수되는 문화·체육·관광·상업·숙박·회의·포럼·전시 등(이하 “공연·문화등”이라 한다)의 기능이 집약된 시설을 말한다.
2.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란 제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정안은 제명으로 “한국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나라만의 특색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우리나라만의 특색을 강조하기 위해 제명에 “한국”을 사용하는 법률로는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한국수화언어법」을 예로 들 수 있음.

안 제2조제1호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공연법」 제2조제4호15)에 따른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함)과 그에 부수되는 문화·체육·관광·상업·숙박·회의·포럼·전시 등(이하 “공연·문화등”이라 함)의 기능이 집약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일상에서는 제정안의 “한국형 복합문화공간”과 유사한 성격의 공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복합문화공간16)’과 ‘복합문화시설17)’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두 용어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을 문화시설의 하나로 정의18)하고 있고, 「사회기

15)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구로구, 복합문화공간 ‘구로문화누리’ 조성… 24일 개관식 개최’, 조선일보, 2026. 2.

17)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서울균형발전 포털 홈페이지(<https://uri.seoul.go.kr/>)

1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 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복합문화시설을 명시¹⁹⁾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일부 법률에서 ‘복합문화시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공간’은 여러 시설을 아우르는 ‘시설’보다 광의의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종류 및 시설의 규모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복합문화공간의 기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등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유사한 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²⁰⁾를 참고하여

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 시설

복합문화공간의 종류와 규모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 제2조의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정의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범주가 문화·체육·관광·상업·숙박·회의·포럼·전시 등을 모두 아우르는바, 특정 ‘공간’으로 규정하기에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의 범주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국제회의집적시설”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 안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8호에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4.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 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3조부터 ~ 제5조까지)

제 정 안
제3조(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의 원칙)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공연·문화등 기능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2. 교통·환경·안전 등 공공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3.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4. 지역 문화·경제와의 연계 및 상생·협력 5. 환경·사회·기업과의 상생의 가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운영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법제 정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이 국가 브랜드 제고 및 한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교·관광·문화교류 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교통·치안·환경·문화예술 진흥 등과 연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9조에 따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이나 안전에 관한 법률과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안 제3조는 제목을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본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즉, 제3조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으나, 조문의 제목은 다른 입법례²¹⁾와 같이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 정책 집행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그런데,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여러 입법에서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노력을 규정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자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5조제1항은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조성 및 운영에 유리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되 일부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제정안에 따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으로 보이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²²⁾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되고 있음.

해당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가 3,120억원인 점과 건립 이후 복합문화공간에서 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이 법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²³⁾하고 있고, 제정안은

22) 참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 주요 추진현황’ 참조

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14.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유료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관계법률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안 제5조제1항은 후술하게 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양 법률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5조제2항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9조에 따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종합계획 등의 계획이나 안전에 관한 법률과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안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획’과 달리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점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다. 삭제

라. 「전기통신사업법」

마. 「전파법」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사. 「주택법」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차. 「산지관리법」

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을 감안하면 유사입법 제24)를 참고하여 해당 자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조 제목도 조문의 내용과 일치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 제5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라는 요건이 불명확한바, 유사입법 제25)를 참고하여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5) 「첨단의료단지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4장(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절차 (안 제6조부터 ~ 제12조까지)

제 정 안
제6조(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2.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후보지 선정의 기준 및 절차 3. 교통·환경·안전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 방향 4. 민간투자 유치 및 재원조달 방안 5. 지역상생 및 문화예술 진흥 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개발계획의 수립)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사업추진 일정 및 단계별 목표 3. 공연장·부대시설·배후지 등의 배치계획 4. 대중교통·도로·주차시설 등 교통과 관련된 계획 5. 환경·소음·조명 등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방안 6. 안전·위기관리 및 방재계획

제 정 안

7. 재정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계획

8. 지역상생 프로그램 및 이행계획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의 설치) ①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형 복
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선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해당 지역에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이하 “특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관보
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
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특별구역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특별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특별구역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제 정 안

· 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특별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시행자의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공모 또는 지정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건전성과 자금조달 능력
2. 공연장 및 복합문화시설 개발·운영 경험
3. 안전관리 및 환경·지역 등 상생 계획의 적정성
4. 민간투자 구조 및 공공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선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3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정안에 따른 사업절차와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절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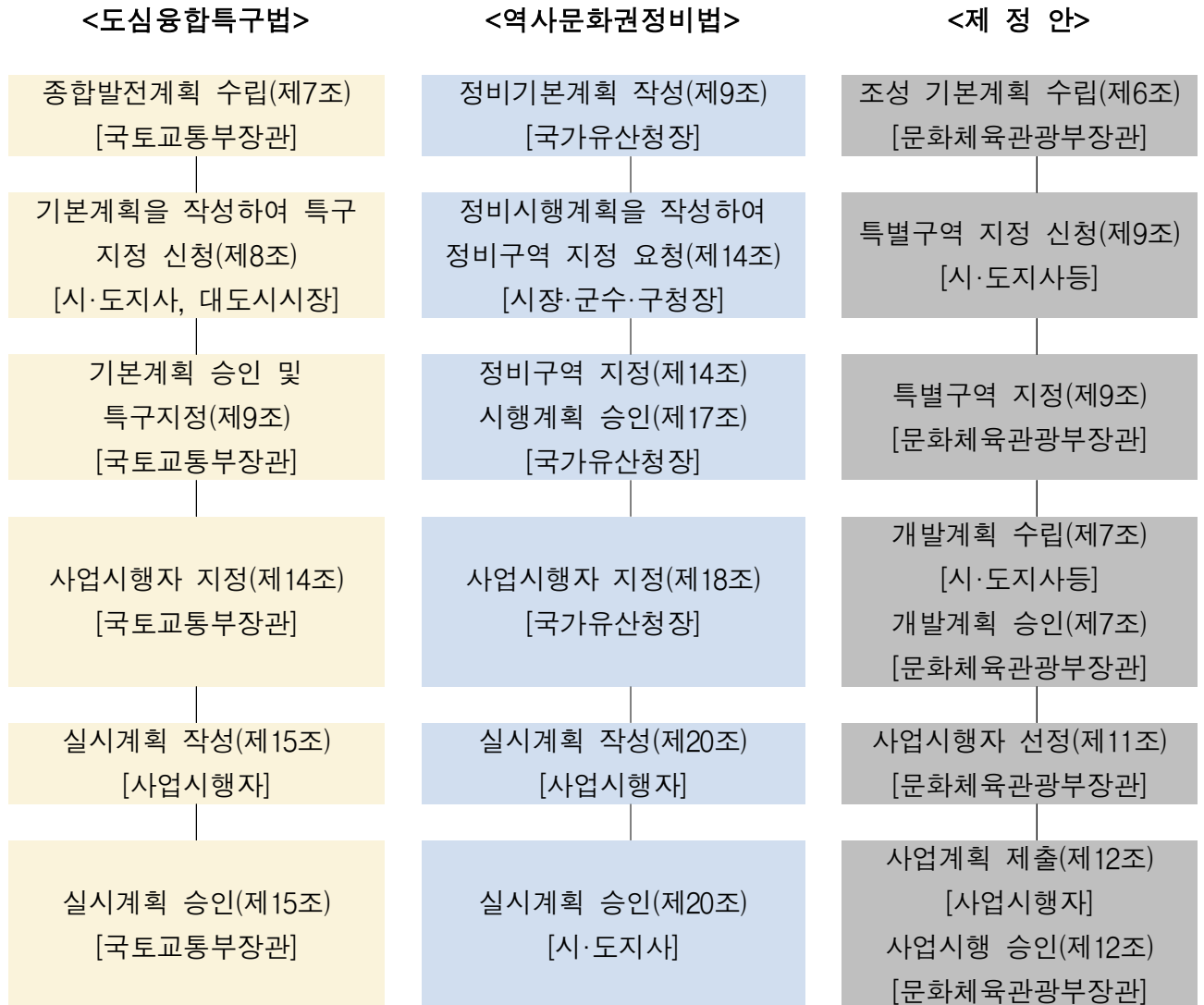
제정안에 따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공연장을 포함한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임.

제정안에 따른 사업절차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의 구역 지정 신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구역 지정, ④ 지정된 구역의 시·도지사등의 개발계획 수립,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업시행자 선정, ⑥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제출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업시행 승인임.

유사하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한 구역을 지정한 후 해당 구역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개발사업을 하도록 규정한 법률들의 사업절차는 다음과 같이 개정안과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를 보이는 점이 있음.

① 중앙행정기관장의 기본계획의 수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구역 지정 요청, ③ 중앙행정기관장의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④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업시행자 지정, ⑤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임.

< 제정안에 따른 사업추진절차와 유사법률의 사업추진절차 비교 >



즉, 제정안은 유사한 다른 입법들과 달리 시·도지사등이 특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면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심의를 위해서는 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 시·도지사등의 구체적 계획 제출이 선행되어야만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시·도지사등이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특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사업절차 관련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조문의 순서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특별구역의 신청·지정, 개발계획의 수립·승인, 사업시행자 선정 순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안 제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책무와 관련된 계획·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안 제6조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법을 통해 문화, 관광에 관한 법정 기본계획 및 공연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바, 별도 시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안 제6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자연·생활·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환경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및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²⁶⁾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따라 제정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제 정 안	환경부 수정의견
제6조(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6조(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u>의견</u> 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한	③ ----- ----- ----- ----- ----- ----- ----- <u>의견(「환경영향평가법」 제</u>

26)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 정 안	환경부 수정의견
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u> <u>의를 포함한다)을</u> ----- -----.
④·⑤ (생략)	④·⑤ (생략)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정해지며²⁷⁾, 전략환경영

27)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수립과 관련된 입법에서도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전략환경평가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례가 드문 점을 감안한다면,

제정안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 보다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을 통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의 설치 (안 제8조)

안 제8조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특별구역 지정 및 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과 달리 명칭에 ‘심의’가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명칭을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안 제8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개발계획 심의와 조성사업 추진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한바, 별도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특별구역 지정 등 (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9조는 특별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10조는 특별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목적을 위한 ‘구역’ 등을 지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의사의 조정 등을 위하여 구역 지정에 앞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²⁸⁾하고 있음.

28)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2.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3. 대학·연구소·기업·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4.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③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지정”을 “변경

이는 특정한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의 경우에도 다른 정부부처의 정책과 중복, 충돌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의 다른 정부부처 정책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특별구역 지정에 앞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특정 목적을 위한 ‘구역’ 등을 지정하는 법률들은 지정과 변경지정을 한 조문에 두고,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²⁹⁾하고 있으므로, 제정안도 이를 참고하여 지정·변경지정, 지정해

지정”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29)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변경지정된 도심융합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등의 의견 청취 및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제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 경우 지정해제의 사유도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후 몇 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아 사업 시행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개발계획 수립 (안 제7조)

안 제7조는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시·도지사등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3.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비사업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비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승인·결정등 및 제21조에 따른 허가등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등이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특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은 특별구역 지정과 관련된 조문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7조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수립한 개발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유사입법례³⁰⁾를 참고하여 이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임.

(6) 사업시행자 선정 등 (안 제11조 및 제12조)

안 제11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인 사업시행자를 공모 또는 지정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안 제11조제2항은 사업시행자 선정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제4항은 사업시행자의 선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3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 제11조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사업시행자의 선정은 특정인에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³¹⁾이므로 특허 또는 인가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³²⁾

따라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를 들어 유사입법례³³⁾를 참고하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 ③ 지방공사, ④ 민간투자자, ⑤ 상기 ①~③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등으로 규정

31) “이와 같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임”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32) “지정제도 도입 시 인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연관성이 큰 제도인 경우에는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349.

3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시행자의 지정) 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공모(公募)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설립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선정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11조제1항은 공모 또는 지정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모(公募)’가 사업자를 지정하는 한 방식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를 ‘공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다’고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유사입법례³⁴⁾를 참고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改築)·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권익보호 측면에서 청문을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³⁵⁾하므로,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11조제2항제2호는 사업시행자 선정시 고려사항으로 공연장 및 복합문화시설 개발·운영 경험을 규정하고 있는데, ‘복합문화시설’은 제정안에서 처음 사용되고 있는 용어임.

따라서,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용어를 제정안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항마목³⁶⁾에 규정되어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을 ‘복합문화시설’로 정의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35)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정도가 크거나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청문을 필요절차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714.

36)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보임.

한편, 안 제12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승인받기 위해 조성사업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사입법 제37)를 참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승인에 앞서 해당 시·도지사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관할 시장·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조성토지 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계획서(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변경 승인을 받도록 법문에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2조제1항과 제12조제2항 모두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입법례³⁸⁾를 참고하여 조 제목을 ‘사업의 착수’로 하고, 이를 별도의 조로 분리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라.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안 제13조 및 제14조)

제 정 안
제13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 공간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용도구역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제 정 안

-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채석허가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제 정 안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그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14조(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3조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관련 인허가등의 협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각각 받도록 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인허가 등 의제의 범위에 관하여는 유사한 수준의 의제가 된 법률은 다음과 같고 이를 참고하여 인허가 등 의제의 합리적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제정안의 인허가 의제 범위 >

제 정 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8.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제 정 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용도구역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채석허가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제 정 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9.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제 정 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2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의 승인 4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4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한편, 인·허가 등 의제와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39)까지에서 개별적 법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허가 등 의제와

기준과 절차, 인허가 등 의제의 효과 및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를 요청받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반해 제정안 제13조제2항은 인허가 의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행정기본법」 보다 협의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는 의

39)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되는 인허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유사입법례⁴⁰⁾에서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과 효과에 관하여는 인허가 등 의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안에서도 해당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3조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허가 의제는 개별 인·허가의 목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한바, 기본·개발계획 및 조성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허가를 일괄 갈음하는 것은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31.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는 안 제13조제1항제1호의 「건축법」 제4조⁴¹⁾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 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로 인허가의제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전 국토에 걸친 토지이용·보전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방의회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므로,

도시·군관리계획 전부를 의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난 개발을 초래하고 도시계획 체계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중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⁴²⁾에 한정하여 의제할 필요가 있다는

41)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의견을 제시함.

③ 행정안전부는 안 제13조제1항제4호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례는 공공성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안 제13조제1항제16호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이 아닌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에 한하여 동의하고, 원활한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관리청과의 협의에 대한 의제를 추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안 제13조제4항의 공유재산 사용료는 타 법률상 인허가와 같이 행정절차에 따른 수수료 성격이 아닌 재산에 대한 사용료로서,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삭제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인허가 의제와 함께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강행규정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④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 제13조제1항제17호의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⁴³⁾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등은 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가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이외의 기관이 수도를 공급하거나 경영할 수 없는바, 관련 조항을 “수도사업의 인가(다만, 사업시행자가

43) 「수도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삭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가신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시·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도지사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수도법」에 따른 일반 수도사업자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안 제13조제1항제18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⁴⁴⁾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의제에 대하여 국가는 해당 제도를 통해 대규모 사업의 합리적인 에너지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나, 제정안에는 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에너지 사용계획 제출의 무가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경우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회의 심의⁴⁵⁾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사업주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 중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 대행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산업단지계획)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

아울러, 안 제13조제1항제21호의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 허가는 국가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 12. (생략)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4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서류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서류

7.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

8.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⑥ 산림청은 안 제13조제4항의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령에서 수수료가 감면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감면 여부를 제정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산지관리법령 제도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마. 도시계획·건축에 관한 특례(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도시계획·건축에 관한 특례) ① 특별구역에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1.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화 또는 변경 절차의 간소화 3.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용도 제한 완화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의 범위·기준 및 절차는 안전·환경·경관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⁶⁾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규정⁴⁷⁾하고 있음.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략)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

또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은 [별표1]⁴⁸⁾을 통해 용도별 건축물의 규모 및 층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안 제15조는 이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상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화 또는 변경 절차의 간소화, 건축물의 층수 및 용도제한 완화 특례를 규정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보다 경제성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안 제15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관리계획으

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48)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로 결정⁴⁹⁾하는 사항으로 개별법에 의한 절차 간소화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기반시설 용량, 경관·환경, 일조권 확보, 안전 등과 직결되는 주요한 도시관리 수단이며, 용도지역별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정해지는 사항으로, 개별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완화할 경우 기반시설 부족, 도시경관 훼손,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제정안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용도, 밀도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삭제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건축법」의 특례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은 제5조⁵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으로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의 완화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50)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 13. (생략)

바.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안 제16조)

제 정 안
제16조(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① 특별구역에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이하 “교통영향평가”라 한다)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 절차를 통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②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은 해당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 절차·방법, 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6조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임.

이는 행정 절차의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교통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문제점을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그 대상⁵¹⁾은 유사한 측면이 있음.

5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관광단지의 개발과 체육시설의 설치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평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사업 실시·시행계획의 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4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을 연장하여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²⁾

이에 안 제16조제2항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결과 통보 기간에 예외를 두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임.

한편, 교통영향평가의 절차에서는 사업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닌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52)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치하여 그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⁵³⁾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16조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삭제하고 안 제16조제2항을 별도의 조로 분리한 후 유사입법례⁵⁴⁾를 참고하여 조 제목을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5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될 경우
2.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도록 한 경우
3.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4) 「공공주택특별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구조성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협의를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안 제16조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①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공연·문화·관광산업 등을 한 곳에 집약한 문화·집회시설로 보이며, 해당 시설은 일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상당한 인파와 교통량이 발생·밀집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사업일수록 주변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과 안전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심도있는 평가가 필요한데,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평가의 부실화를 초래하며,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통합심의 과정에서 각 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 심의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통합심의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는 평가항목 등을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준비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전문기관에서 검토한 후 협의 의견을 통보하는 절차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통합심의 절차를 통한 간소화는 곤란하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평가 협의의 방법과 절차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사. 재정지원 등(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 정 안
제17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연장 및 필수부대시설(안전·소방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비 2. 공공성을 위한 문화·공익시설 설치비 3. 교통·환경·안전 관련 기반시설 설치비 제18조(세제 감면) ① 국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비용·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11.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공공적 성격 및 사업 완료 후 사업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제17조), 세제 감면(제18조), 부담금 감면(제19조)을 규정하고 있음.

문화예술 및 체육관광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법률에서도 관련 규정⁵⁵⁾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에서도 해당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55)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6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①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 문화산업단지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안 제17조는 문화시설, 공익시설,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⁵⁶⁾를 인용하고,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⁵⁷⁾를 인용하여 해당 조문 내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공익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나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두고 있는

56)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공공시설’⁵⁸⁾로 자구를 변경하여 해당 조문 내에서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7부터 제19조까지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① 재정경제부는 안 제18조에 대하여 개별법상 조세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필요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세제지원이 가능하고, 감면 세목을 특정하는 것은 경제여건 및 재정상황에 맞는 지원 방식을 제약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② 기획예산처는 안 제19조에 대하여 부담금 감면 및 면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타 법령에서 개별 부담금의 감면 조항을 별도 규정하는 것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투명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 부담금 감면 대상·기준은 각 부담금별 소관부처가 부담금 부과목적 및 취지, 타 지역 및 사업과의 형평성, 감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후 각 근거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③ 국토교통부는 안 제19조제1호의 개발부담금 감면은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 및 배분이라는 정책실현 목적과 준조세적인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 감면 대상을 한정하고 형평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제정안 외에도 개별법상 유사 감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감면 요구가 쇄도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제도가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서는 필요한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⁵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경감 제도를 활용하여 경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또한, 안 제19조제6호의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그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사업시행자는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감면 또는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④ 농림축산식품부는 안 제19조제4호의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감소시키는 원인자에게 농지 보전·관리·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농지의 보존과 조성 필요성 및 농지관리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부담금 감면 확대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19조제11호의 대체초지조성비는 축산발전기금 수입 재원으로 초지 전용에 따른 대체초지의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초지의 현황, 보전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감면 확대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5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산림청은 안 제19조제7호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감면여부를 별도로 정하는 것은 산지관리법령 제도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 제19조제8호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열악한 상수도 재정여건에서 개발시행자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그 비용을 국민전체가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안 제19조제9호의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은 생태계 복원목적 및 국방목적 사업만 예외를 인정한바, 개발사업을 위하여 감면 규정 신설시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안 제19조제10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을 감면·면제할 경우 개발된 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부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제12호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도시 침수 피해, 공중 위생 향상 등을 위해 개발시행자 등이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하수를 발생시키는 건물의 신축·증축 등 시행자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게만 감면·면제 해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 운영기관의 설립·지정 (안 제20조)

제 정 안
제20조(운영기관의 설립·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연장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2. 공연·행사 유치 및 마케팅 3.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4. 환경·지역 등과의 상생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운영기관의 설립·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0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 이후 해당 공간의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20조제2항은 운영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3항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필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항은 재단법인 규정의 준용, 제5항은 운영기관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20조제5항의 운영기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정취소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운영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운영기관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권익보호 측면에서 청문을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⁶⁰⁾하므로,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안 제11조에서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하여도 청문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하나의 법률 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청문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보칙 장(章)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임⁶¹⁾

60)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정도가 크거나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청문을 필요절차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714.

따라서, 제정안에 별도의 보칙 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보칙 조항의 성격인 제24조(권한의 위임) 조문 앞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운영기관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20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복합문화공간의 운영 형태와 관련하여 공공 조성방식 이외에도 민간 주도 조성 등의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 주도의 운영기관 설립·지정 근거 규정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6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712.

자. 민간자본의 유치(안 제21조)

제 정 안
제21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국가는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또는 운영기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의 방식을 활용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구조·위험분담·공공성 확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계약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협의를 총괄할 수 있다.

안 제21조는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⁶²⁾는 민간투자사업의 방

6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식을 BTO(Bulid-Transfer-Operate)방식(제1호), BTL(Bulid-Transfer-Lease)방식(제2호), BOT(Bulid-Operate-Transfer)방식(제3호), BOO(Bulid-Own-Operate)방식(제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같은 법 제8조의2⁶³⁾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지정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사업’과 같은 법 제9조⁶⁴⁾에 따라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6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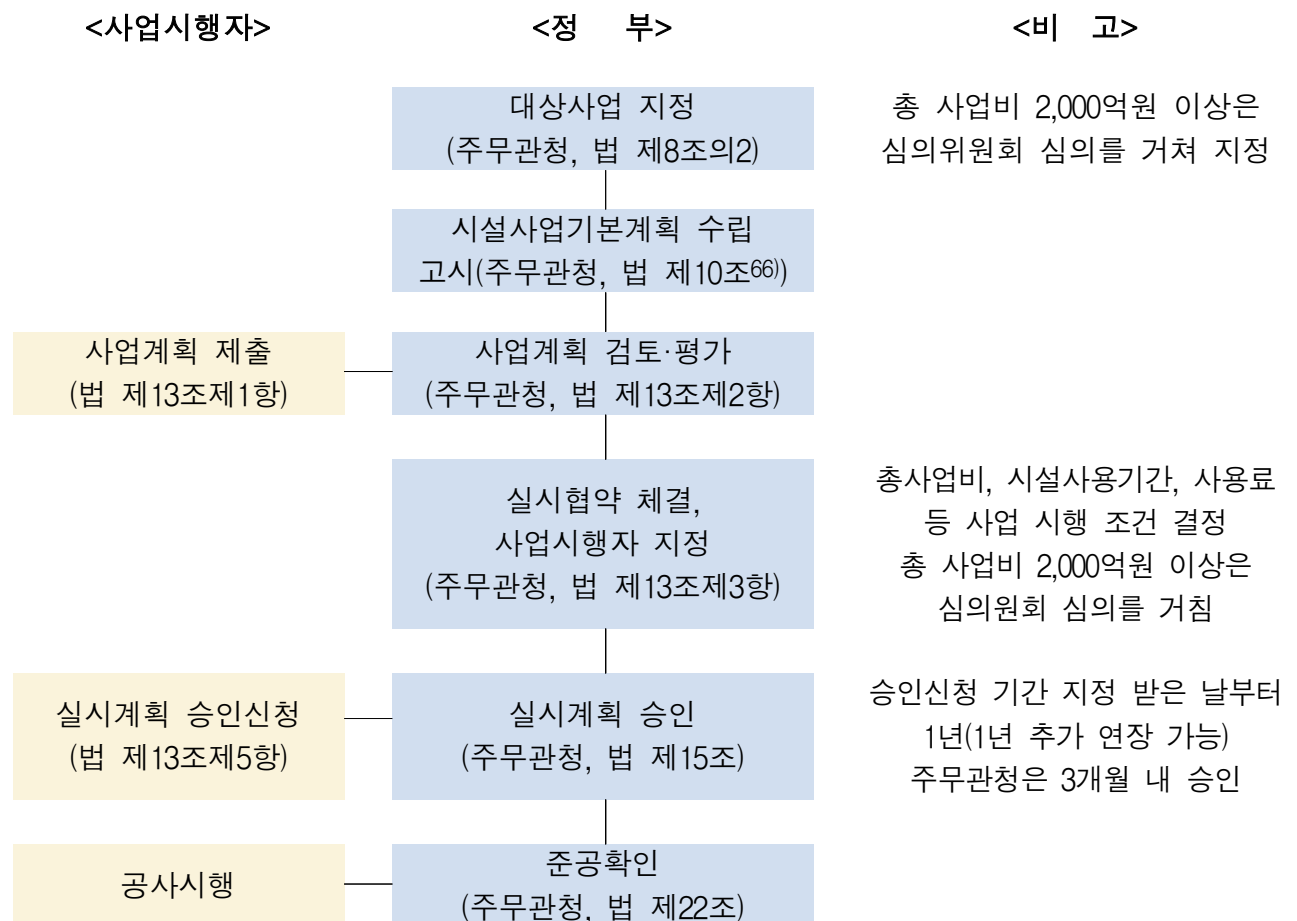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민간제안사업’으로 구성되고,⁶⁵⁾

사업시행절차가 제정안과 다른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정부고시사업 중 BTO 방식의 사업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

< 민간투자사업 중 수익형 민자사업(BT0,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



※ 자료: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별표1]을 바탕으로 재작성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145호), 2025. 7.

6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준공확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즉,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사용료 등 수익구조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결정되고 있고 총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수익구조 등은 사업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안 제21조제2항과 차이를 보임.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의 출입, 국유·공유 재산 무상 사용 등의 특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근거,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을 규정⁶⁷⁾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운영

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6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9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내용이 공고된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기관에게 제정안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안 제5조제1항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에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하는 경우 특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부터는 제정안이 아닌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있다.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 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填)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 18. (생략)

차. 안전관리 조치 등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 정 안
제22조(안전관리조치)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람객·종사자·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재·붕괴·테러·대형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 2. 대규모 인원의 관리 및 피난 유도 계획 3. 설비·전기·무대장치 등 시설안전 점검계획 4.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실태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지역 등 상생 의무) ① 사업시행자 및 운영기관의 장은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운영 과정에서 환경 등과의 상생 원칙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친환경 설계·운영 2. 공정한 고용·근로환경 조성 및 차별금지 3. 투명한 조직 운영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② 사업시행자 및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상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상생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1. 지역 문화예술인·문화예술단체와의 협업 프로그램 2.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3. 지역 주민 대상 문화향유 및 교육 프로그램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정 안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안 제22조제1항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안 제22조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운영기관의 장의 해당업무 이행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는 공연 등 행사개최시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는 복합문화 공간에서 인명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철저히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제정안은 시정요청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유사입법례⁶⁸⁾를 참고하여 시정요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영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안 제23조는 사업시행자 및 운영기관의 장의 환경 등과 상생원칙에 따른 노력 사항 및 지역상생을 위한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사업 완성 후에도 해당 공간이 지역의 중추로써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안 제23조보다 앞선 안 제11조제2항제3호는 사업시행자 선정 사항으로, “환경·지역 등 상생 계획의 적정성”, 안 제20조제2항제4호는 운영기관의 업무로 “환경·지역 등 상생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지역 등 상생 계획 또는 프로그램은 정의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해당 계획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법률 수범자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환경·지역 등 상생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실체적인 내용이 제23조에 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 제11조제2항제3호와 제20조제2항제4호의 자구를 “제23조에 따른 환경·지역 등과의 상생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형 복합문화공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공연·문화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특례와 지원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와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부칙 제1조는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공연·문화 등의 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특례와 지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진행 중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등이 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임.

비록 해당 조항은 수익적 성격의 소급입법이기는 하지만,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될 사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요건 특례와 지원 범위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

□ 사업 개요

- 시행사 : (주)서울아레나 컨소시엄
 - * 주식회사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법인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23, 1-24 일대
- 규 모 : 50,149m²(연면적 119,097m² / 지상6층, 지하2층)
- 주요시설 : 아레나 공연장(18,000석), 중형공연장(2,000석),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
- 사업기간 : 2023년~2027년(건설 40개월), 2027년~2057년(운영 30년)
- 사업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 총사업비 : 3,120억원

□ 주요추진경과

- 2022. 3. 3.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원안가결)
- 2022. 4. 4.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2. 6. 14. : 사업시행법인 설립
- 2022. 1.~10. : 지하안전영향평가, 굴토심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 평가 등 14개 인·허가 완료
- 2023. 4. 3. :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 연장 승인(6개월)
- 2023. 10. 3. : 실시계획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시)
- 2023. 11. : 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착공
- 2027. 3.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준공 예정